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 가. 일제강점하에 인천광역시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 나.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독립운동에 대한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기념사업회 설립 및 기념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insuk3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인천광역시에서 펼쳐진 3.1만세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인천광역시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정신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

2.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3.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4.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임.

4. 작성자

- 산업위원회 이 한 구 의원